



2026년 9월 (2026.9.1.~9.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의회, 인공지능법 개정 통해 성적 딥페이크 금지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AI 개정안(Digital Omnibus on AI)을 승인했다.¹⁾ 표결 결과는 찬성 423표, 반대 57표, 기권 174표였다. 개정된 EU 인공지능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식별이 가능한 실제 인물의 친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이미지·음성·영상 등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른바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이다.²⁾

본 개정법의 조항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 등을 직접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AI 시스템을 출시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EU 역내 사업자는 물론, EU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인물의 사진을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조작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합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적 진입 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 수준은 높아지면서 AI 악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확산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는 2025년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콘텐츠는 최근 6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했으며, 2023년 약 50만 건에서 2025년에는 약 800만 건이 공유된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규율해 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참고자료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n.d.). "Regulation (EU) 2024/1689: The AI Act Explorer,"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i-act-explorer/#doc-overview> (접속일: 2026.9.16.)
- Euronews (2026.5.19.). "How the EU plans to ban non-consensual 'nudifier apps',"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5/19/not-without-my-consent-how-europe-plans-to-ban-non-consensual-nudifier-apps> (접속일: 2026.9.16.)
- European Parliament News (2026.6.16.). "AI Act: EP approves simplification measures and 'nudifier' app ban,"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611IPR45207/ai-act-ep-approves-simplification-measures-and-nudifier-app-ban> (접속일: 2026.9.16.)

1)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on AI)는 EU가 인공지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관련 규정을 한꺼번에 개정한 법률 개정 패키지다. 이번 개정에는 인공지능법(AI Act)의 일부 규정을 조정하고,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 AI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기관이고,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각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조작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생성형 AI를 특정 개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디지털 성폭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 Mar Negreiro (2025.7.3).
“Children and deepfake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5\)775855](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BRI(2025)775855)
(접속일: 2026.9.16.)

 유럽의회 소속 의원이자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공동보고자인 마이클 맥나마라(Michael McNamara)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가 인공지능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법 적용 일정을 조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제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술이나 플랫폼이 실제 인물,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들을 모욕·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은 관련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인공지능법 제99조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와 행정 과징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기업이 EU가 금지하는 AI 관련 행위를 지속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57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7% 중 더 큰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징금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위반 행위의 성격·중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본법의 제99조는 기업이 관련 규제기관이나 인증기관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750만 유로(약 119억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1% 중 더 큰 금액까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는 보다 낮은 과징금 기준이 적용되며, 소형 중견기업에도 일부 과징금에 대한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EU 회원국은 자국의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 행정 과징금을 어느 범위까지 부과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역시 각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법원이나 별도의 관할 기관이 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이 회원국 간에 동등하게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인공지능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실제 인물의 친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해당 문제를 단순한 유해 콘텐츠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자율성·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성적 폭력과 학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관련 AI 시스템의 제공과 사용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회원국 차원을 넘어 EU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집행 체계를 통해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27일 발효됐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실제 인물의 친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향후 해당 규정이 실제 AI 서비스의 설계·운영 방식과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안전조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Sweden

◦ 연금 가속 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 성별 격차 확대 우려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스웨덴 연금청은 2026년 6월 18일 연금 가속 장치(pensionsgasen)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법이 2026년 8월 1일부터 발효,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는 안나 텐예(Anna Tenje) 사회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는 연금분과위원회에서 발의되었다. 연금 가속 장치는 연금 기금의 불필요하게 높은 적립을 방지하고, 해당 재원이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연금 기금의 자산이 부채를 15% 이상 초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잉여금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스웨덴의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여성과 남성 간 연금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2027년 적용을 앞둔 연금 가속 장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장치의 도입으로 연금 성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로, (1)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연금, (2) 소득비례연금 구조의 공적연금, (3) 직업(퇴직)연금, (4) 개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공적연금은 소득연금(16.0%)과 프리미엄연금(2.5%)으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총소득의 18.5%이다.

-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가상 개인계좌에 등록되며, 매년 평균 임금 상승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스웨덴 연금청은 매년 연금 재정 자산, 즉 앞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납부할 보험료의 가치와 완충기금액의 합계와 연금 부채, 즉 현재 및 미래 은퇴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을 산정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커질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따라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재정안정장치, 이른바 '연금 감속 장치'가 작동한다. 실제로 이 장치에 따라 2010년, 2011년, 2014년에 소득비례연금이 자동으로 삭감된 바 있다.

- 한편 프리미엄연금은 금융확정기여 방식으로 운용되며, 가입자가 별도의 자본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공공 펀드에서 자동으로 운용된다. 올해 6월 말에는 독일 총리도 연금 지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스웨덴식 공적 연금 펀드의 도입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보증연금은 사회보험료가 아닌 일반 조세로 전액 조달되지만, 무조건적인 정액 기초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감되는 보충적 형태의 최저생계 보장 장치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공적연금 구조를 바탕으로 연금 가속 장치의 도입을 추진되었다. 2027년부터 시행될 해당 장치는 호황기에 발생한 잉여금 일부를 현재 은퇴자들에게 배분하고, 미래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기존 회계 시스템이 적자를 식별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배분이 가능한 잉여금을 식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 Deutsche Sozialversicherung Europavertretung (2025.12.). "Swedish pension system", <https://dsv-europa.de/en/news/2026/01/schwedische-gasregel.html> (접속일: 2026.09.10.)
- Financial Times (2026.06.23.). "Germany seeks to set up Swedish-style public pension fund", <https://www.ft.com/content/76f3a074-c0d0-4585-adf3-88d8d43f2d08?syn-25a6b1a6=1> (접속일: 2026.09.14.)
- SCB (2026.06.18.). "Women's pensions are lower than men's - and the gap persists",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befolkning-och-levnadsforhallanden/jamstalldhet/jamstalldhetsstatistik/pong/statistiknyhet/jamstalldhetsstatistik-kvartal-2-2026/> (접속일: 2026.09.14.)
- Sweden Herald (2025.12.21.). "Women receive the least when Swedish pension surpluses are distributed", <https://swedenherald.com/article/women-receive-the-least-when-swedish-pension-surpluses-are-distributed> (접속일: 2026.09.12.)



한편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uthority)과 스톡홀름대학교 법학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는 잉여금 배분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에 이미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데다, 보증연금 수급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 실제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 2024년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연간 연금 수령액은 남성보다 평균 약 50,000스웨덴크로나(2024년 기준 한화 약 650만 원) 적었으며, 남성 수령액의 약 82% 수준이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적연금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작아 여성의 수령액이 남성의 89% 수준이었던 반면, 퇴직연금에서는 여성의 수령액이 남성의 61%에 그쳐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퇴직연금의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노동시장 이탈 등은 생애소득과 연금 적립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스웨덴 연금제도가 기본적으로 생애소득을 토대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 보증연금 수급 구조 역시 연금 가속 장치의 성별 영향을 살펴볼 때 중요한 요소다. 소득비례연금과 보증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약 120만 명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70%에 이른다. 잉여금이 배분되어 소득비례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경우, 이에 연동해 보증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잉여금이 개인의 연금액에 비례하는 백분율 방식으로 배분되는 만큼, 기존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는 구조이기도 하다.
- 물론 잉여금 배분이 주거보조금이나 노인생계지원금 등 별도의 추가 지원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잉여금 배분이 모든 연금 관련 급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비례연금에 연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별 연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웨덴의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연금 성별 격차는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인 26~29%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잉여금 배분 역시 생애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연금에 적용되는 만큼, 기존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Australia

○ 빅토리아주, 강압적 통제 법제화 논의와 쟁점

조혜인 |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뉴사우스웨일즈주(NSW)는 2024년 7월부터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퀸즐랜드주(QLD) 역시 2025년 5월부터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주 모두 강압적 통제를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의 패턴(course of conduct)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법의 적용 범위와 범죄 성립 요건, 최고 형량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NSW에서는 범죄의 적용 대상을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로 한정하는 반면, QLD에서는 친밀한 파트너뿐만 아니라 가족 및 비공식 돌봄 관계(informal care relationship)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가정 내 관계(domestic relationship)'에 적용하고 있다.

타즈메니아주(TAS)는 2004년 「Family Violence Act 2004 (Tas)」를 통해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와 정서적 학대 또는 위협(emotional abuse or intimidation)을 형사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호주에서 최초로 비신체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조항의 실제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후 첫 10년 동안 해당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기소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행위의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젠더폭력을 형사법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빅토리아주(VIC)는 2008년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 (Vic)」을 제정하여 신체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위협 및 강압적·통제적 행동을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의 법적 정의에 포함해 왔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를 법률혼이나 친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괄함으로써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NSW)와 퀸즐랜드주(QLD)에서 강압적 통제의 형사범죄화가 추진되는 동안, 이미 포괄적인 가정폭력 법체계를 갖추고 있던 빅토리아주에서는 강압적 통제를 별도의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와 젠더폭력 관련 단체들은 별도의 강압적 통제 범죄를 신설하는 데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 12월 야당 소속 Georgie Crozier 의원이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Crimes Amendment (Coercive Control) Bill 2025」을 발의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후 빅토리아주 정부는 2026년 8월 「Justice Legislation Amendment (Family Violence, Coercive Control, Good Character, Risk Assessment and Other Matters) Bill 2026」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9월 빅토리아주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에서도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래 타임라인에서는 이러한 빅토리아주의 변화와 함께 호주에서 강압적 통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확대되어 온 흐름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Office of the Premier (2026.8.11.). Labor Protects Victim-Survivors with Landmark New Laws, <https://www.premier.vic.gov.au/labor-protects-victim-survivors-landmark-new-laws> (접속일: 2026.9.19.)
- Parliament of Victoria (2022.8.12.). 'Coercive control' gaining recognition, <https://www.parliament.vic.gov.au/news/justice/coercive-control/> (접속일: 2026.9.19.)
- Parliament of Victoria (2026.9.17.). New laws to criminalise coercive control, <https://www.parliament.vic.gov.au/news/society/coercive-control/> (접속일: 2026.9.17.)
- Victorian Legislation (2026.9.10.). Justice Legislation Amendment (Family Violence, Coercive Control, Good Character, Risk Assessment and Other Matters) Bill 2026, <https://www.legislation.vic.gov.au/bills/justice-legislation-amendment-family-violence-coercive-control-good-character-risk-assessment-and> (접속일: 2026.9.17.)
- Victoria State Government (2021.7.21.). Evidence-based risk factors and the MARAM risk assessment tools, <https://www.vic.gov.au/maram-practice-guides-foundation-knowledge-guide/evidence-based-risk-factors-and-maram-risk-assessment-tools> (접속일: 2026.9.19.)

[빅토리아주의 강압적 통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확대 과정]	
2008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 (Vic)」 제정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위협·강압적(coercive) 행동, 통제·지배를 통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까지 포함
2015	가정폭력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Family Violence) 설립 2014년 발생한 루크 배티(Luke Batty) 사망 사건 등 일련의 비극적인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빅토리아주의 가정폭력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개혁에 착수
2016	가정폭력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 및 227개 권고안 제시 위원회는 800명 이상의 주민 인터뷰, 약 1,000건의 서면 의견서 접수, 25일간의 공개 청문회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227개 권고안을 제시. 이후 빅토리아주는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평가, 정보공유, 가해자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
2018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Multi-Agency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ramework: MARAM) 시행 가정폭력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압과 통제의 행위 패턴(coercion and control)으로 파악하는 접근을 위험평가·관리체계로 본격적으로 제도화
2021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MARAM) 실무지침 개정 개정된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MARAM) 실무지침에서는 강압적 통제를 핵심 개념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대행위가 시간에 걸쳐 반복·축적되면서 피해자를 통제하는 일련의 행위 패턴 또는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을 더욱 강화
2021. 11	빅토리아주 입법평의회(Victorian Legislative Council) 강압적 통제 대응 강화 촉구 빅토리아주 입법평의회(Victorian Legislative Council)는 가정폭력에서 강압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압적 통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사법체계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정부에 촉구
2023. 1	가정폭력 조사위원회 227개 권고안 이행 완료 발표 빅토리아주 정부는 가정폭력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227개 권고안의 이행을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
2023 -24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MARAM) 5개년 근거 검토(5-year evidence review)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MARAM)의 5개년 근거 검토 등을 통해 강압적 통제와 통제적 행동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살인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임을 재확인
2025. 12	「강압적 통제 법안(Crimes Amendment (Coercive Control) Bill 2025)」 발의 야당 소속 조지 크로어(Georgie Crozier) 의원이 「Crimes Amendment (Coercive Control) Bill 2025」을 발의하여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을 제안
2026. 8	빅토리아주 정부의 강압적 통제 형사범죄화 법안 제출 빅토리아주 정부가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standalone criminal offence)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2026. 9.10	강압적 통제 법안 빅토리아주 의회 최종 통과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빅토리아주 의회를 최종 통과
2028. 3 예정	강압적 통제 조항 시행 예정 새롭게 도입된 강압적 통제 조항은 정부가 그 이전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2028년 3월 1일부터 자동 시행될 예정

- Victoria State Government (2026, August 27). About the Royal Commission into Family Violence, <https://www.vic.gov.au/about-royal-commission-family-violence> (접속일: 2026.9.19.)
- Victoria State Government (2026, September 7). Family violence reform timeline of progress, <https://www.vic.gov.au/family-violence-reform-timeline-progress> (접속일: 2026.9.21.)
- Women's Legal Service Victoria (2026, September 10). Joint statement: Safety depends on support, not criminalisation, <https://www.womenslegal.org.au/impact-stories/coercive-control-roadmap> (접속일: 2026.9.19.)
- 조혜인(2024.8.26.).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SW)주, 가정폭력 범죄로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 시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research/ftandView.do?p=1&idx=132485> (접속일: 2026.9.19.)

 **앞선 타임라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토리아주는 2008년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08」을 통해 가정폭력을 폭넓게 정의하고, 이후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MARAM)를 통해 개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강압과 통제의 패턴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발전시켜 왔다.**

 **강압적 통제의 형사범죄화를 둘러싼 학계와 젠더폭력 관련 전문가·활동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 여성법률서비스 빅토리아(Women's Legal Service Victoria)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젠더폭력·장애 관련 기관은 공동성명³⁾을 발표하고, 강압적 통제를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기관들은 강압적·통제적 행동이 심각한**

3) 공동성명에는 Federation of Community Legal Centres, Australian Muslim Women's Centre for Human Rights, inTouch Multicultural Centre Against Family Violence, Jesuit Social Services, Law and Advocacy Centre for Women, No to Violence, Safe and Equal, Youthlaw, WIRE, Women with Disabilities Victoria 등이 참여함..

피해를 초래하며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핵심적인 형태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피해생존자의 안전이나 가해자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누적되는 강압적 통제의 행위 패턴을 형사사법 절차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피해생존자가 반복적인 진술이나 반대신문 등 복잡한 사법절차를 거치면서 재외상화(retraumatisation)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오히려 주된 가해자로 잘못 식별되는 가해자 오인 식별(misidentification) 문제와 함께, 원주민 여성과 이주민 여성 등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범죄화의 부정적 영향이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로 제기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유관기관들은 빅토리아주의 현행 가정폭력 개입명령(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 FVIO) 체계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민사적·예방적 성격을 가지며, 피해생존자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강압적 통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유연한 대응, 피해생존자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으로 발생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강압적·통제적 행동의 패턴에 대응하는 데 독립적인 형사범죄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공동성명은 강압적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범죄 신설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가정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방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강압적 통제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예방 프로그램 확대
- 전문가 교육 강화: 경찰, 검사, 판사(치안판사 포함), 법원 관계자 등 형사사법 및 가정폭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전문교육 실시
- 가해자 오인 식별 방지: 피해생존자가 주된 가해자로 잘못 식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적 모니터링과 법률·데이터 체계 강화
- 경찰 및 사법 대응 개선: 강압적 통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 역량과 관련 사법체계 개선
- 전문 지원서비스 확대: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가정폭력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이와 같이 공동성명은 강압적 통제의 범죄화에 의존하기보다 예방, 조기 개입, 사법 대응,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가해자 개입을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강압적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호주에서는 강압적 통제의 형사범죄화를 둘러싼 논의와 입법이 각 주의 기존 법·제도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강압적 통제의 형사범죄화 자체에 그치기보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책임성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국 United Kingdom

◦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 금지 법안 추진

이지원 |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2026년 9월 영국 정부의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child-like sexual abuse dolls)의 제작·소지·수입을 범죄로 규정하는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 금지 법안(Child-like Sexual Abuse Dolls (Offences) Bill)」이 하원 2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존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의 제작·소지·수입·공급 및 공급 제안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마련되었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압수·몰수도 가능하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범죄자 신고의무(notification requirements)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영국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계기 중 하나는 2017년 데이비드 터너(David Turner) 사건이다. 초등학교 이사이자 교회 관리인으로 일했던 그는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을 수입하다 국경수비대(Border Force)에 적발됐으며, 이후 자택 수색 과정에서 추가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과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 자료가 발견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인형이 기존 법률상 수입이 금지되는 음란물(obscene articl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그는 관련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의 소지가 그 자체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아동 대상 성적 관심이나 성착취 관련 증거와 함께 발견될 경우 관련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은 인형의 소지와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아동 형상 인형이 아동 성착취 이미지나 영상 등 다른 아동 대상 성적 관심의 증거와 함께 발견될 경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기존에는 인형의 단순 소지 자체가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수입·유통·우편 발송 등 별도의 법률 위반 행위를 입증해야 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기존 법체계의 공백을 보완하여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의 소지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온다.

- 기존에는 (1) 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2) 음란물을 판매·유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3) 우편으로 음란물을 발송한 경우 등 별도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기소가 가능했다. 이때 검사는 인형이 성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법률상 음란물(obscene)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했다. 특히 수입죄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물품이 수입 금지·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도 입증해야 했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에서는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의 단순 소지 자체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안은 소지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GOV UK (2026.9.4.). "New law to ban depraved child-like sexual abuse dolls",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law-to-ban-depraved-child-like-sexual-abuse-dolls> (접속일: 2026.9.8.)
-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2.5.31.). "Sex Dolls - Childlike" <https://www.cps.gov.uk/prosecution-guidance/sex-dolls-childlike> (접속일: 2026.9.8.)



영국 정부는 아동 성학대 근절,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개선, 가해자 추적, 피해자와 생존자 보호·지원을 위해 기록적 규모인 1억 파운드(약 1,82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아동 성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범죄·경찰법(Crime and Policing Act) 관련 조치와 함께, 아동 성학대의 조기 발견과 가해자 개입을 강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성학대 대응 강화 조치에는 (1) 아동과 관련된 주요 직책 종사자에게 아동 성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2) 신고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 (3) 법원이 아동 성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아동 성착취를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 생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 (5) 국경수비대의 국경에서의 디지털 아동 성착취물 탐지 및 차단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된다.

-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아동 보호 및 성범죄 정책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예방 정책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에 관한 별도의 기소 지침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및 아동학대 관련 기소 지침의 범주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 특히 실제 판매나 광고 과정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신체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연구에서도 성적 학대 인형의 소유와 사용 자체가 강하게 성별화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 문제가 단순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문제를 넘어, 남성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적 소비와 여성·소녀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재현하는 대상화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안은 아동 보호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가 성적 대상화와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는 구조를 예방한다는 VAWG 정책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의 소지·사용과 실제 아동 대상 성범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는 이러한 인형이나 다른 사실적인 소품의 사용이 아동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접할 때와 유사하게 성적 대상화에 대한 둔감화(desensitisation)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아동 형상 성적 학대 인형을 둘러싼 예방적 우려와 정책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성인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재현·소비하는 여성형 리얼돌 역시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별화된 성규범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여성형 리얼돌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소녀의 신체가 성적 대상으로 재현·소비되는 방식과 그 사회적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